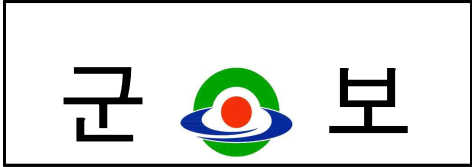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32호 2024. 5. 23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○하천점용허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4-67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64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5월 23일

예 천 군 수 (인)



구 분	하천점용허가
하 천 명	한천(지방하천)
점 용 자 주 소	예천군수(맑은물사업소장)
위 치	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57-3번지 외 13필지
점용면적 (허가량)	영구 : 561.9㎡ 일시 : 1,359.4㎡
점용목적	빗물펌프장 및 관로 설치
사업개요	도시침수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및 관로 설치
점용기간	영구 : 2024년 5월 23일 ~ 영구 일시 : 2024년 5월 23일 ~ 2027년 12월 31일